

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공 보

제614호 2017. 10. 18.(수)

선 결	기관의 장

고 시

- 거창군 고시 제2017-124호 도로명주소 고시 3
- 거창군 고시 제2017-125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(개간) 시행계획(변경) 승인 고시 5

공 고

- 거창군 거창읍 공고 제2017-61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서 공시 송달 공고 6
- 거창군 공고 제2017-1034호 거창군계획시설(교통시설 소로2-97호선)사업 공사완료 및 준공 검사 필증교부 7
- 거창군 공고 제2017-1078호 재결신청사항 열람공고(소로3-94호선)개설공사 9

이 첨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거창군 / 편집 : 기획감사실 (055-940-3043, 행정 3043)

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·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. 10. 18.

거창군수

- 도로명주소 :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지내길 261-3 외 4건(부여 5건)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고시일	도로명 부여(폐지)사유	비고
(별 도 열 람)	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과(☎055-940-3311~3)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-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-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·변경·폐지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·변경·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,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-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○ 도로명주소부여

일련 번호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고 시 일		도로명부여사유	비고
			도로명	도로명주소		
1	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둔동리 728-1	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수남로 1297	2009-07-02	2017-10-18	행정구역명(수동면+남상 면) 활용	
2	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712	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감약2길 58-60	2009-04-01	2017-10-18	감악산 기슭에 있는 자연마을명에서 유래된 길로 두번째 분기되는 도로	
3	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죽림리 677, 686-1	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누룩재길 170	2009-04-01	2017-10-18	마을 둘레에 느릅나무가 많았고, 서쪽 주상면 내오리로 넘어가는 재를 누룩재로 불렀던 것에서 유래	
4	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산리 산51-63	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산2길 325-19	2009-04-01	2017-10-18	가야산에서 마을 뒤까지 남서로 뻗은 산줄기가 용 갈아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두번째 도로	
5	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569-32, 1569-31	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지내길 261-3	2009-12-28	2017-10-18	침녕쿨의 뿌리에 속한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	

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(개간) 시행계획(변경) 승인 고시

「농어촌정비법」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(개간) 시행계획 변경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1. 사업목적: 농지조성(밭작물 재배)
2. 사업내역

위 치		사업시행면적(m ²)			사업비	사업 예정기간	사업시행자		
		구 분	지 적	개간 승인면적			변경사유	주 소	성 명
계		당 초	1,592 m ²	1,592 m ²	12,980천원	2017. 3. 4. ~ 2018. 3. 3.	경남 거창군 거창읍 장팔1길 29-12	이은식	
		변 경	1,491 m ²	1,491 m ²					
거창읍 장팔리	산293-7	당 초	829 m ²	829 m ²					등록전환측량에 따른 면적변경
		변 경	757 m ²	757 m ²					
	산293-8	당 초	763 m ²	763 m ²					
		변 경	734 m ²	734 m ²					

3. 사업효과: 국토의 효율적 이용 (농지조성)
4. 열람장소: 거창군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☎ 055-940-3542

2017년 10월 18일

거 창 군 수

공 시 송 달 공 고

「폐기물관리법」 제8조(폐기물의 투기금지) 규정을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재산압류예고 통지를 송달(등기)하였으나,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17년 10월 11일

거 창 읍 장

1. 제 목: 「폐기물관리법」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서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: 2017. 10. 12. ~ 2017. 10. 26.(15일간)
3. 공고대상자 및 내역

성 명	주 소	생년월일	내 용	과태료	반송사유	비 고
곽혜*	거창군 거창읍 대평 6길 47 아쇼카빌 402호	78.05.20	생활폐기물 불법투기	210,800원	폐문부재	독촉장발부 압류예고

4. 공시송달 내용

가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제3항 및 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하오니 **2017년 10월 26일**까지 과태료고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(농협 또는 우체국)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또한,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최초 체납에 따른 5%의 가산금 부과 이후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1.2%의 증가산금(최고60개월까지)이 부과됨을 알려 드리며,

다.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 (압류의 요건 등) 규정에 의거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5. 문의처 : 거창읍사무소 개발과 환경담당 (☎ 055-940-7320)

군계획시설(교통시설:소로2-97호선)사업 공사완료 공고

거창군 고시 제2017-121호(2017.9.29)로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된 거창군계획시설(교통시설 : 소로2-97호선)사업이 완료되어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 합니다.

2017. 10. 16.

거 창 군 수

1. 사업의 위치 :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401-7번지 일원
2. 사업의 종류 및 규모

종류	사업명	위치	시행규모						최초 결정일	사업기간
			구분	류별	번호	연장 (m)	폭 (m)	면적 (㎡)		
군계획 시설: 교통 시설	도시계획도로 (소로2-97호선)	거창읍 가지리 401-7번지	소로	2	97	100	8.0	880	경고 1978-103호 (1978.03.20)	2017.03.08 ~2017.09.18

3.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
 - 주 소 :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
 - 성 명 : 거창군수(도시건축과장)
4.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(☎ 055-940-359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군계획시설사업 준공검사 필증

귀하(중)께서 제출하신 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완료보고서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8조 제3항에 따라 교부합니다.

신청인	성 명	거창군수	법인등록번호	611-83-00012				
	소재지	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						
준 공 내 용								
사업명칭	대우아파트 앞(소로2-97호선)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							
사업목적	군계획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기반시설을 확충하고, 긴급 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							
사업위치	경남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401-7번지 일원			사업량	L=100.0m, B=8.0m			
시행방법	신청인 직영			시행기간	2017. 3. 8 ~ 2017. 9. 18			
토지이용현황 (㎡)	지목별	도	과					합 계
	면 적	879	1					880
토지이용계획 (㎡)	용도별	도로						
	면 적	880						
기반시설계획	시설별	도로						
	개 요	880						
소요 사업비	402백만원			공사완료일	2017. 9. 18			

2018년 10월 16일

거 창 군 수

재결신청사항 열람공고

거창군에서 시행하는 「거창중학교 인근 도시계획도로(소로3-94호선)개설공사」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.

2017. 10. 18.

거 창 군 수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- 종류 : 도시계획도로
 - 명칭 : 거창중학교 인근 도시계획도로(소로3-94호선) 개설공사
2. 사업자 : 거창군수
3. 위치 :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88-3번지 일원
4. 사업내용 : L=142m, B=6m
5. 공고기간 : 2017. 10. 18. ~ 2017. 11. 1.(14일이상/초일불산입)
6. 관계서류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
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중에 거창군 도시건축과 도시개발담당 **☎ 055-940-3596**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7. 수용대상 토지 및 물건 : 붙임

[붙임]

□ 토지조서

일련번호	수용할 토지의 표시						소유자		관계인		
	소재지 (거창군)	지번	지목		면적(㎡)		성명	주소 (현주소)	성명	주소	권리 종류
			공부	실제	공부	편입					
1	거창읍 대동리	102-45	대	대	6	6	김종이	경남 거창군 거창읍 동동6길 8-5			
2	거창읍 대동리	102-43	대	대	66	66	김종이	경남 거창군 거창읍 동동6길 8-5			

□ 물건조서

일련번호	수용물건의 표시					소유자		관계인		
	소재지 (거창군)	지번	물건의 종류	구조및규격	수량 (면적)	성명	주소 (현주소)	성명	주소	권리 종류
1	거창읍 대동리	102-43	주택	블록강판기와 9*5	45㎡	김종이	경남 거창군 거창읍 동동6길 8-5			
2	거창읍 대동리	102-43	주택	블록강판기와 6*3	18㎡	김종이	경남 거창군 거창읍 동동6길 8-5			
3	거창읍 대동리	102-43	화장실	블록판넬	6㎡	김종이	경남 거창군 거창읍 동동6길 8-5			
4	거창읍 대동리	102-43	창고	블록판넬3*5	15㎡	김종이	경남 거창군 거창읍 동동6길 8-5			
5	거창읍 대동리	102-43	창고	블록스레트 3*1	3㎡	김종이	경남 거창군 거창읍 동동6길 8-5			
6	거창읍 대동리	102-43	가추	스레트,2*1.5	3㎡	김종이	경남 거창군 거창읍 동동6길 8-5			
7	거창읍 대동리	102-43	마당	-	50㎡	김종이	경남 거창군 거창읍 동동6길 8-5			
8	거창읍 대동리	102-43	장독대	-	3㎡	김종이	경남 거창군 거창읍 동동6길 8-5			
9	거창읍 대동리	102-43	수도	-	1식	김종이	경남 거창군 거창읍 동동6길 8-5			
10	거창읍 대동리	102-43	화단	-	8㎡	김종이	경남 거창군 거창읍 동동6길 8-5			
11	거창읍	102-43	동백	20년	1주	김종이	경남 거창군 거창읍			

일련 번호	수용물건의 표시					소유자		관계인		
	소재지 (거창군)	지번	물건의 종류	구조및규격	수량 (면적)	성명	주소 (현주소)	성명	주소	권리의 종류
	대동리		나무				동동6길 8-5			
12	거창읍 대동리	102-43	오가피	20년	1주	김종이	경남 거창군 거창읍 동동6길 8-5			
13	거창읍 대동리	102-43	감나무	40년	1주	김종이	경남 거창군 거창읍 동동6길 8-5			
14	거창읍 대동리	102-43	단풍 나무	10년	1주	김종이	경남 거창군 거창읍 동동6길 8-5			
15	거창읍 대동리	102-43	연산홍	5년	10주	김종이	경남 거창군 거창읍 동동6길 8-5			
16	거창읍 대동리	102-43	비자 나무	7년	1주	김종이	경남 거창군 거창읍 동동6길 8-5			
17	거창읍 대동리	102-43	꽃사과	10년	1주	김종이	경남 거창군 거창읍 동동6길 8-5			
18	거창읍 대동리	102-43	제피 나무	10년	1주	김종이	경남 거창군 거창읍 동동6길 8-5			
19	거창읍 대동리	102-43	화장실	블록판넬2*2	4㎡	김종이	경남 거창군 거창읍 동동6길 8-5			
20	거창읍 대동리	102-43	우물	-	1식	김종이	경남 거창군 거창읍 동동6길 8-5			
21	거창읍 대동리	102-43	가추	판넬	4.5㎡	김종이	경남 거창군 거창읍 동동6길 8-5			
22	거창읍 대동리	102-43	가추	강판	9㎡	김종이	경남 거창군 거창읍 동동6길 8-5			
23	거창읍 대동리	102-43	우물	-	1식	김종이	경남 거창군 거창읍 동동6길 8-5			
24	거창읍 대동리	102-43	담장	-	25.5 ㎡	김종이	경남 거창군 거창읍 동동6길 8-5			
25	거창읍 대동리	102-43	대문	철재,목재	2식	김종이	경남 거창군 거창읍 동동6길 8-5			
26	거창읍 대동리	102-43	포장	-	28㎡	김종이	경남 거창군 거창읍 동동6길 8-5			

의 견 서

제 목		
소유자	성 명	
	주 소	
사 업 시행자	사업자명	거창군청
	사 업 명	거창중학교 인근 도시계획도로(소로3-94호선)개설공사
수용대상토지, 물건내역		
의 견		
<p>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17. . . 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의견제출인 (서명 또는 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화번호 :</p> <p>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귀중</p>		
비 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▶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 	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
제31조(열람) 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(이하 "토지수용위원회"라 한다)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,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토지수용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중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[전문개정 2011.8.4]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5조(재결신청서의 열람 등) 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그 신청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(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·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게 송부하여 공고 및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.

②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(행정시를 포함한다)·군 또는 구(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)의 게시판에 공고하고,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그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공고의 내용과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·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.

⑤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나면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를 지체 없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, 제출된 의견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
⑥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의견서를 수리할 수 있다.